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

제 안 설명

-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의원입니다.
- 제333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제안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 결의안은 교통안전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행 법제도의 한계 때문입니다.

-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제조물의 결함 여부와 손해 발생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첨단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복합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자료, 시험 기록, ECU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은 제조사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그 결과 급발진 사고에 대한 제조물 결함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 자동차 관리 제도에는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여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본 결의안은 다음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입증책임 전환입니다. 국회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적 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현행 구조는 공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둘째,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입니다.

국회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독립적으로 기록하는 장치(독립 블랙박스) 설치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하위 법령과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과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이번 결의안이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